

#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67
----------	--------

제안년월일 : 2023년 04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지원대상에서 직업전문학교는 미래전략과제 발굴에 적합한 교육 기관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례안을 정비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지원대상에서 직업전문학교를 삭제함(안 제5조제4호).

#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하고, 안 제8조를 제5조로 한다.

안 제6조(중전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를 “대학”으로 한다.

안 제7조(중전의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사업을”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u>제5조(지원대상)</u>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u>대학 및 직업전문학교</u></p> <p>5. ~ 7. (생략)</p>	<p><u>제6조(지원대상)</u> ----- <u>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u> -----</p> <p>-----</p> <p>-----</p> <p>1. ~ 3. (조례안과 같음)</p> <p>4. ----- <u>대학</u></p> <p>5. ~ 7. (조례안과 같음)</p>
<p><u>제6조(지원사업)</u>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u>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u>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u>제7조(지원사업)</u> ----- <u>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u> ----- <u>사업을</u> -----</p> <p>-----</p> <p>-----</p> <p>1. ~ 4. (조례안과 같음)</p>
<p><u>제7조</u> (생략)</p> <p><u>제8조</u> (생략)</p>	<p><u>제8조</u> (조례안 제7조와 같음)</p> <p><u>제5조</u> (조례안 제8조와 같음)</p>

## 서울특별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을 확립하고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전략과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 사회 및 환경에서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존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환경보전사업, 신기술기반사업, 공간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및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
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
7. 그 밖에 시장이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
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3. 시 지속가능한 발전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